

서울특별시의회
제32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3. 11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은 최근 동물보호법 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
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,
맹견의 출입금지 조항 상
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
어린이집, 유치원,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되어 있어
타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출입 공간에 대한
별도 조항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며,

- 반려동물과 관련해, 반려동물 놀이터 외
현재 서울시에는 없으나, 곧 건립 예정 중인
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·운영에 있어
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은 물론,
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과

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
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
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2조 제14호를 신설하여
‘반려동물 테마파크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6조의2조 제1항 및 제2항 신설을 통해
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7조의3 제8호에 해당하는
맹견의 출입금지 등 조항과 관련하여,
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
기존 제한된 장소 이외에
맹견의 소유자 등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
시장이 지정, 고시하는 장소에 대한
다수인의 피해방지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25조의 경우,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에 있어
교육, 홍보 뿐만 아니라,
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,

- 안 제29조 신설을 통해
제2조 신설한 ‘반려동물 테마파크’ 정의를 기반으로
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사항을 신설해,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능은 물론,
예산의 범위 내 경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
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